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438 |
|----------|-----|

제출년월일 : 1997. 9. 25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농업기반조성과 기계화율의 제고로 36,142대의 농기계를 확보하여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나, 수리시 부속품 대금의 전액을 농가부담으로 징수하고 있어, 농산물 수입개방 이후 농가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코자 일정금액 이하의 부속품 대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함(안제3조 제3항)

나. 부속품 대금의 농가전액 부담에서 대당 20,000원 이하시 부속품대를 지원 수리하고 대당 20,000원 이상시 20,000원을 공제한 초과금액만 징수(안제5조 제1항)

3. 본 문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대당 20,000원 이하의 부속품 수리시는 그 대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당 20,000원을 초과하는 부속품 수리시는 그 대금중 20,000원을 공제한 초과금액만 징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비 및 공구확보대장” 중 “비고”란을 “금액”란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부속품 수불대장” 중 “결제”란과 “품명”란 사이에 “월일”란을 삽입하며,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수리일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 ①,② (생략)</p> <p>③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 시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실시하며 읍.면.리.자연부락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④ (생략)</p> <p>제5조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고 그 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생략)</p> | <p>제3조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자연마을</p> <p>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 ① 수리시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대당 20,000원 이하의 부속품 수리시 는 그 대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 당 20,000원을 초과하는 부속품 수리 시는 그 대금중 20,000원을 공제한 초과금액만 징수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